

비대면 보험모집 행위에 있어 피보험자 동의 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전 한 덕**

<차례> _____

- | | |
|----------------------------|-------------------------------|
| I. 서론 | III. 비대면 보험모집에서의 동의방법의 다양화 방안 |
| II.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서 동의에 관한 쟁점 | IV. 결론 |
-

주제어 : 타인의 생명보험, 서면 동의, 피보험자, 비대면 모집행위, 전자서명

<국문초록>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러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은 도덕적 위험성과 사행성을 띄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법의 규정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그 타인의 전자서명에 의한 동의, 전화에 의한 동의 등 서면 이외의 다른 대체 수단에 의한 동이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서면 동의만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서면동의제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여 불편을 초래하게 하고, 보험회사에도 대면접촉, 서류보관 등에 따르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 부담을 발생시킨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피보험자 서면동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비대면 보험모집행위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본 논문은 2016년 8월 17일에 개최되었던 (사)한국보험학회 2016년 하계연합학술대회에서 본인이 발표한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법학박사(한국외국어대학교, 상사법), 소속: KB생명보험 준법지원부.

- 논문접수일(2016.12.10), 심사개시일(2016.12.24), 게재확정일(2016.12.26)

I. 서론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면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구조로 체결된다. 이와 같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사망보험금의 지급은 타인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은 피보험자 살해 위험과 같은 비도덕성과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사행성을 띄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1991년 12월 31일 개정된(시행일: 1993년 1월 1일) 것으로 개정 전에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하여 동의를 시기나 동의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보험계약 성립 후의 분쟁과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의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였고, 동 규정은 지금까지 변경됨이 없이 적용되어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과 법무부, 법원행정처, 금융위원회 등에서는 상법 조항의 문구 그대로의 해석에 치중한 나머지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¹⁾ 이러한 엄격한 상법의 규정 및 그 해석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전자서명에 의한 동의, 녹취에 의한 동의 등 인터넷이나 전화 등의 수단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보험모집행위를 함에 있어 통용되는 다양한 동의 방법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최근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융합기술은 보험에 있어서도 전자창약 시대를 열게 하였고, 더 나아가 앞으로는 홍채나 지문인식 등을 통해서도 다양한 보험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보험모집 방법도 기존의 대면모집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통신판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실이 이러한에도 피보험자의 동의 방식으로 서면동의만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보험소비자나 보험회

1) 각 기관들의 반대 논거에 대해서는 본 논문 5~6페이지, 19~20페이지 참조

사 모두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임은 자명하다.

본 논문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 서면동의 방식에 대하여 재해석하고, 최근 시대 흐름에 보조를 맞추어 동의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특히 비대면 모집행위에 있어 동의 방법을 개선할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II. 타인의 사망 보험계약에서 동의에 관한 쟁점

1. 의의

‘생명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상대방 또는 피보험자의 생사에 관하여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상법 제730조). 이에 대하여 ‘손해보험계약은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지만 생명보험계약은 손해의 실제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는 정액 보험이다.

‘타인의 생명보험’이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을 의미한다.²⁾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한다.³⁾⁴⁾ 이 경우 특히 자기 이외의 제3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생명보험을 협의의 ‘타인의 생명보험’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을 ‘자기의 생명보험’이라 한다.⁵⁾

보험계약자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누구를 피보험자로 정할 것인가를 결

2)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면 ‘타인의 사망보험’, 타인의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면 ‘타인의 생존보험’, 생존과 사망을 동시에 보험사고로 하면 ‘타인의 생사혼합보험’이라고 한다.

3) 박세민, 「보험법」 제3판, 박영사, 2015, 826면.

4)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를 대리하여 아내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아내이기 때문에 타인의 생명보험으로 볼 수 없다(양승규, 「보험법」 제5판, 삼지원, 2004, 451면).

5) 정찬형, 「상법강의(하)」 제16판, 박영사, 2014, 769면.

정하여야 하는데(상법 제728조 2호),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는 피보험자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보험이 도박화될 우려가 있고, 보험수익자 등 이해관계자가 피보험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법 제731조에서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다. 즉 우리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하여 보험계약 체결시점에 피보험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도록 요구하고 있다.⁶⁾

2.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주요 내용

(1) 의의

상법 제731조 제1항은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외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형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의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⁷⁾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요구하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타인인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⁸⁾ 이 경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계약의 외형적 형식

6) 이 밖에도 우리 상법상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그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보험금청구권)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제731조 제2항),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 변경하는 경우(상법 제734조 제2항) 등이 있다.

7)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 서면동시에 관한 사항은 1991년 12월 31일 상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당시 법무부에서는 개정 이유로 “보험계약 성립후의 분쟁과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의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8)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는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외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형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의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도 들어있다고 해석되므로,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그와 같은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여 무효의 주장은 보험자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96.11.22. 선고 96다37084 판결).

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의 체결 경위나 보험계약자의 가입의사 등 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⁹⁾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시까지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만을 얻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을 뿐 동의를 결여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생각건대 피보험자의 동의에 관한 조항은 강행법규로 봄이 타당하고, 피보험자의 동의는 보험계약을 성립시키는 성립요건이 아니고 동의를 발생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효력발생요건으로 보아야 한다.¹⁰⁾ 따라서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없는 경우 그 보험계약은 강행법규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배제하는 특약도 무효가 된다.¹¹⁾

(2) 입법 연혁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래 1962년 상법 제정시에는 제731조 제1항을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만 규정하여, 동의를 시나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었다.

그런데 1991년 12월 31일 상법이 개정되면서 “보험계약 체결시”에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라는 문구를 삽입하면서 피보험자 서면동의를 채택하였고, 현재 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피보험자 서면동의를 신설한 이유에 대해 당시 정부에서 제출한 “상법 중 개정법률안”의 개정 이유를 보면 “보험계약 성립후의 분쟁과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의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전자문서를 이용한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보험거래에 있어서도 서면동의만을 고집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고 이에 따라 상법 제731조 제1항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9)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판결.

10) 최기원, 「보험법」 제3판, 박영사, 2002, 615면 ; 정희철, 「상법학하」, 박영사, 1990, 480면, 양승규, 앞의 책, 453면 ; 박세민, 앞의 책, 828면.

11) 대법원 1996.11.22. 선고, 96다37084 판결 ;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74007 판결 등.

주장이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2012년 12월 27일 박대동 의원 등 11명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¹²⁾

그러나 2013년 4월 22일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문위원 중 1인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필요한 타인의 동의로 서면동의 외에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도 가능케 하려는 내용으로서 업무처리의 편의와 효율성, 비용 감소 등 효과가 기대되고 전자문서 활성화의 추세를 고려할 때 긍정적인 개정 방향으로 평가된다. 다만 피보험자의 동의는 보험의 도박화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인 점, 전자적 서명이나 전자문서의 사용 시 생길 수 있는 위변조·부정사용에 대한 대비책 등 안전성·신뢰성 확보방안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하여 상법개정안에 대해서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¹³⁾ 또한 2014년 2월 14일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 체결 시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필요로 하는 취지가 피보험자의 어떤 직접성, 직접 서명을 해서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전자서명이나 공인인증서에 의한 서명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어떤 원칙이기 때문에 이 원칙에 예외를 들만큼 그런 필요성은 없다고 보여진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여 타인의 생명보험에 있어 전자서명 도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고, 같은 날 법원행정처 또한 “공인전자서명의 경우에는 이미 다른 법률에 그 공인전자서명에 의한 서명은 본인의 의사

12) 상법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에서는 “최근 소비자들의 금융거래 편의성 증진과 종이문서 사용 감축 등 금융기관의 사업비 절감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보험료, 보장범위 등의 중요사항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였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서명 방식(태블릿PC 화면상에 직접 서명하는 방식)이 추가되었고,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계좌 이체·출금 등의 방법으로 전자서명 방식이 추가되는 등 전자문서와 전자서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추세임. 현행법 제731조는 사행계약의 위험성 방지를 위해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 계약에는 ‘서면에 의한 동의’로만 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서명’을 활용하지 못하고 종이문서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최근의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추세에 부합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전자문서 활성화를 통한 녹색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의 동의방식에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에 의한 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13) 제315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2013.4.22).

로 추정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것을 다시 여기에다 두면 동의반복의 의미에 불과한 것이고, 일반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좀 위험성이 많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는 것을, 대비책을 마련해서 일반 전자서명도 공인전자서명만큼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면 다음에 추진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여 법무부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¹⁴⁾¹⁵⁾¹⁶⁾

결국 19대 국회에 제출한 상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하였고, 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2016년 5월 29일 임기만으로 폐기되었다. 20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2016년 11월 15일 이용주 의원 외 21인은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서면으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중에 있다.

(3) 동의를 성질

피보험자의 동의를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법률행위설과 준법률행위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동의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로서 준법률행위에 속한다고 본다.¹⁷⁾ 따라서 피보험자의 동의에는 민법상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피보험자가 무능력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동의가 가능하며, 일반적인 대리의 법리에 따라 대리에 의한 의사표시도 가능하다. 또한 동의를 의사표시는 상대방 즉 보험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의사표시자(피보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이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111조) 또한 민법상 진의 아닌 의사표시(제107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제108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제109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등은 모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14) 제322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2014.2.14).

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 역시 “직접적인 서명을 필요로 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박대동 의원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

16)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또한 원칙적으로 서면동의를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7) 양승규, 앞의 책, 447면 ; 박세민, 앞의 책, 828면 ; 이기수·최병규·김인현, 「보험해상법」 제9판, 박영사, 2015, 313면.

피보험자의 동의는 보험계약을 성립시키는 성립요건이 아니고 동의가 있을 때까지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효력발생요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¹⁸⁾ 생각건대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제3자의 의사표시를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보는 것은 계약의 일반관념과 상치되고, 타인의 생명보험계약도 일반 보험계약과 같이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동의는 효력발생요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¹⁹⁾

(4) 동의를 시기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는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또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²⁰⁾ 따라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피보험자가 동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전 동의주의는 도박보험의 위험성,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공서양속의 침해위험성을 예방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그 입법 목적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²¹⁾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어떤 효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제1설은 서면동의를 효력 발생요건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사후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보험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²²⁾ 제2설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동의를 법적 성질은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계약체결 당시에 이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은 상법 제68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고 다만 서면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²³⁾ 제3설에 의하면 보험계약은 원래부터 불요식 낙성계약이므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어도 성립하고 다만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동의는 반드시 보

18) 박세민, 앞의 책, 828면.

19) 박세민,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해석상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안암법학』 제25권, 안암법학회, 2007, 919면.

20) 대법원 1996.11.22. 선고 96다37084 판결 ; 대법원 2001.11.9. 선고 2001다55499 판결 ; 대법원 2003.7.22. 선고 2003다24451 판결 등.

21) 강대섭,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 『상사판례연구』 제15집, 한국상사판례학회, 2003, 856면.

22) 정동윤, 『상법(하)』, 법문사, 2011, 710면.

23) 정찬형, 앞의 책, 769면.

험계약 체결시까지 언을 필요는 없고 보험사고 발생전까지 이루어지면 족하다고 한다.²⁴⁾ 제4설은 피보험자의 동의는 그 계약의 성립전 또는 적어도 성립시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계약체결 이후에 언을 경우 그 계약은 무효라고 한다.²⁵⁾

상법 제731조의 규정은 사후 추인이 불가능한 강행법규인데, 강행법규에 위반 되는 경우 즉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보험계약을 무효로 보고 있다. 대법원도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를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없다면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로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여 사후추인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해당 보험계약을 무효로 보고 있다.²⁶⁾ 그러나 피보험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계약 성립 전에 동의를 표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서면동위에 의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보험의 혜택을 보장해 주는 것이 보험계약자나 보험자 모두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한다.²⁷⁾

한편 피보험자의 서면동위는 계약 성립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일단 서면으로 동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²⁸⁾ 다만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있으면 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견해도 있다.²⁹⁾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체결될 때까지의 동의와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자에 대하여 동의 철회 사실을 통지하는 형식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³⁰⁾ 또한 동의 자체에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해당 동의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³¹⁾

24) 최준선, 「보험법·해상법·항공운송법」, 박영사, 2012, 324면.

25) 장덕조, 「보험법」 제3판, 법문사, 2016, 444면.

26)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27) 유주선,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요건에 관한 연구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에서-”, 「안암법학」 제25권, 안암법학회, 2007, 957면 ; 조지현,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추인·피보험자의 추인 및 무효인 보험에서의 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제26권 2호, 한국상사법학회, 2007, 50면.

28) 박세민, 앞의 책, 834면.

29) 박세민, 앞의 책, 834면.

30) 박세민,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해석상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안암법학」 제23권, 안암법학회, 2007, 927면 ; 조현락,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고시연구」, 고시연구사, 2005, 348면.

(5) 보험자의 설명·확인 의무 발생 여부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1항에서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8호에서는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상법 제731조 제1항에 관한 사항도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 등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지급제한 사유 등 계약의 중요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그 설명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판례는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 등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타인의 생명보험은 다른 보험과는 달리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없으면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설명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신의칙상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내용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다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서 요청되는 설명의무 내지 정보제공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있어야 보험계약의 효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설명할 의무를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한다.³²⁾

(6) 동의 요건 흠결시 법적 효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해당 보험계약은 확정적으

31) 이기수 외2인, 앞의 책, 347면 ; 최기원, 앞의 책, 617면 ; 양승규, 앞의 책, 455면 ; 정찬형, 앞의 책, 747면.

32) 대법원 2001.11.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 대법원 2004.4.23. 선고, 2003다62125 판결.

로 무효가 된다.

또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필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하여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³³⁾ 다만 보험수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³⁴⁾

한편 상법 제662조에서는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라고 규정하여,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시점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결국 소멸시효는 민법의 일반 법리에 따라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보험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 보험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³⁵⁾ 판례도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진행한다.”라고 판시하여³⁶⁾ 이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각 보험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볼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로서는 이미 무효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납입한 보험료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반환받을 수 없음에도 계속 부당하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어서 이중적인 불이익을 감당하여야 하고 이는 보험계약자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하여 구하는 보험료

33) 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30263 판결 ; 대법원 2008.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34)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35) 같은 의견. 박세민, 앞의 책, 838면.

36)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2612 판결.

반환청구권은 매달 보험료를 납입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라 무효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납입한 보험료반환청구권이 전체로서 하나의 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보험계약자가 마지막 보험료를 납입한 때 비로소 동일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납입한 보험료 전체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여 그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³⁷⁾

(7) 동의의 방법

1) 상법상 동의의 방식

종래의 개정전 상법에서는 동의의 방식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었으나 199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부터는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상법에 의하면 서면 이외의 방법에 의한 동의(전자동의, 녹취 등)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면동의 방식을 요하는 점에서 단순한 동의를 요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한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면동이는 실무적으로는 보험계약청약서에 마련된 피보험자의 서명란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청약서에 의하여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동의의 의사가 표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각종의 서면에 의한 동의도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³⁸⁾ 다만 앞으로 체결하게 될 모든 사망보험계약에 대해서 미리 동의를 받는 포괄적인 동의는 인정되지 않는다.³⁹⁾ 또한 동의는 명시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피보험자는 자신이 하는 동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상황에서 동의를 하여야 하고⁴⁰⁾ 서면 이외의 구두에 의한 동의나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는 유효한 동의로 볼 수 없다.

피보험자의 동의를 타인이 대리 또는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

37) 김은경, “보험계약 무효시 보험료반환청구와 소멸시효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2612 판결에 대한 평석”, 「강원법학」 제35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2, 442면.

38) 이성남, “타인의 생명보험의 규제에 관한 연구”, 「금융법연구」 제9권 제1호, 한국금융법학회, 2012, 308면.

39) 정찬형, 앞의 책, 747면 ; 양승규 앞의 책, 454면 ; 임용수, 「보험법」, 법률정보센터, 2006, 485면 ;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등.

40) 정찬형, 앞의 책 746~747면 ; 임용수, 앞의 책, 485면.

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의를 준법률행위의 의사표시로 볼 때, 민법의 일반원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민법상 대리 법리에 의해서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수여받은 사람이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에는 그 서면동의를 유효하다고 본다. 대법원 판례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를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서명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나 보험모집인이 타인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후 타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분명한 사람이 권한 범위 내에서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에도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범위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⁴¹⁾

한편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서면동의를 어떠한 방식으로 행사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상법 제732조에서는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15세 미만자는 사망을 담보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15세 이상의 미성년자만 해당된다 할 것이다. 생각건대 동의는 준법률행위이므로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서면동의를 직접 하거나 법정대리인이 서면동의를 대리할 수 있다고 본다.⁴²⁾ 다만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신의 신체에 관한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이므로 미성년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므로 미성년자의 동의하에 법정대리인이 동의하거나 미성년자가 스스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⁴³⁾ 다만 이 경우에도 동의 여부를 전적으로 법정대리인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⁴⁴⁾

41) 대법원 2006.12.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42) 같은 의견: 이성남, 전게논문, 309면.

43) 이성남, 전게논문, 309면.

44) 같은 의견: 박세민 앞의 책, 832면 ;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840면.

2) 서면동의 방식의 문제점 및 다른 대체적 수단의 허용 필요성

최근 전화나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상품의 판매가 활성화되고 있고, 노트북이나 테블릿 등을 활용한 전자청약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등 보험 환경에도 급속한 변화가 일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금융거래 편의성 증진과 종이문서 사용 감축 등 금융기관의 사업비 절감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보험료, 보장범위 등의 중요사항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였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서명 방식(테블릿 PC 화면상에 직접 서명하는 방식)이 추가되었고,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계좌이체·출금동의 방법으로 전자서명 방식이 추가되는 등 전자문서와 전자서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행 상법 제731조는 사행계약의 위험성 방지를 위해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오로지 '서면에 의한 동의'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의 전자문서 활성화 추세와 부합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인 트렌드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험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즉 현행 상법 제731조가 타인의 보험계약 체결을 함에 있어서는 서면동의만을 요구하고 있어 보험모집을 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보험상품 판매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또한 피보험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불편하게 되어 있다.

또한 최근 전자청약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자가 청약서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작성을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상법 조항으로 인하여 전자청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보험계약 당사자의 편의 제고 및 계약체결의 신속성은 상당부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실무적으로도 종이 청약서 분실에 따른 정보유출의 문제, 불필요한 청약서 출력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낭비 및 청약서 보관비용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인한 보험료 인상 문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⁴⁵⁾

따라서 서면동의만을 인정하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수정하여 서면동의 이외에도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전자서명에 의한 동의, 기타 녹취, 화상통화, 생체정

45) 박세민, "상법 제731조상 피보험자의 동의 방식 다양화에 대한 연구", 2016년 상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230면.

보46)를 통한 동의방식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생체정보를 보험산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체정보를 은행 등에 사전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제공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생체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될 경우에는 사회적인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⁴⁷⁾ 이하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피보험자의 동의 방식을 다양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전화, 인터넷 등 비대면 보험거래는 그 필요성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것인바, 비대면 보험거래에 있어 피보험자의 동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Ⅲ. 비대면 보험모집에서의 동의방법의 다양화 방안

1. 비대면 보험거래의 개념과 서면동의를 둘러싼 문제점

(1) 비대면 보험거래의 개념 및 관련 법령

비대면 보험모집 방식은 전화, 우편, 인터넷, 쌍방향 TV 등 통신 및 비대면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고객과의 접촉을 통해 보험모집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⁴⁸⁾ 비대면 보험거래는 이용하는 매체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우편방식에 의한 모집(DM : direct mail), 전화를 통한 모집(TM : tele-marketing), 온라인을 통한 모집(CM : cyber marketing)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보험회사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전화를 통한 모집과 온라인을 통한 모집에 대해서 검토한다.

보험업법 제9조(자본금 또는 기금)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화우

46) ‘생체정보’라 함은 생체가 발생하는 심전(心電), 심음(心音) 등의 여러 가지 정보로서 구체적으로는 지문, 홍채 내지 유전자정보와 같은 하나 또는 복수의 인체정보 내지는 인체기록을 의미한다(김은경, “생체정보와 보험법상 활용문제”, 『경영법률』 제26권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6, 328~329면 재인용).

47) 김은경, 상계논문, 342~343면.

48) 서재익, “비대면 보험시장에 대한 현황분석과 활성화방안 :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6면.

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을 하는 보험회사는⁴⁹⁾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여, 통신판매 즉 비대면 영업방식에 의한 보험 모집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는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제2항에 대한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1) 사망 또는 장애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 2) 사망 또는 장애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 3) 신용생명보험계약 또는 신용손해보험계약, 4)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되는 보험계약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고 본인확인내용, 보험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보험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에 대하여 음성녹음 하는 등 그 증거자료를 확보, 유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음성녹음 내용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 등의 제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한다.⁵⁰⁾

한편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서는 사이버몰⁵¹⁾을 통하여 보험모집을

49)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을 하는 보험회사란 총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을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회사(이하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라 한다)를 말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13조).

50) 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

51) ‘사이버몰’이라 함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공인전자서명에 의해 자필서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험업법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르면 비대면 보험모집에 있어서 전화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자필서명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판매를 통하여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장애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의 음성녹취의 방식이 자필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이 경우에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이버몰을 통한 보험계약 역시 보험계약자에 한해서 공인전자서명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은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비대면 보험거래의 장단점

1) 온라인을 통한 보험거래

온라인을 통한 보험거래의 장점으로는 첫째, PC 온라인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설계사가 중간에 개입됨이 없이 보험계약자 본인이 직접 청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집인의 부실판매에 따른 분쟁소지가 축소될 수 있다.⁵²⁾ 예를 들어 청약서상의 고지의무를 보험가입자가 직접 작성함으로써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방해, 부실고지 안내 등을 둘러싼 사후적 갈등 발생 소지가 낮아지게 된다. 둘째, 온라인보험 고객은 대면채널 고객에 비하여 소비자들의 권리행사에 대한 기대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온라인보험은 모집대상, 모집방법 등 계약절차에 있어 상당한 투명성이 요구된다.⁵³⁾ 셋째, 온라인을 통한 보험모집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가 저렴하다. 넷째, 온라인을 통한 보험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가입절차가 간소하여 거래의 신속성을 기할 수 있다. 다섯째, 인터넷보험은 채널을 통해 부수적으로 회사 또는 보험상품의 홍보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상에 보험상품과 회사 이미지를 올릴 경우 다수의 인터넷 이용

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52) 정홍주 류원우·우종균, “PC통신을 이용한 보험판매 활성화 방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996, 111면.

53) 안철경·변혜원·서성민,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보험연구원, 2011, 30면.

자가 해당 상품과 회사 이미지를 보게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홍보 효과가 상승하게 된다.

반면에 인터넷이라는 제약된 조건하에서 보험설계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복잡한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인터넷에 취약한 고연령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온라인보험 가입의 접근성이 제약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온라인보험은 전통적인 보험영업 방식인 푸쉬마케팅(Push Marketing)에 부적합하다. 즉 보험상품은 전형적으로 푸쉬마케팅이 요구되는 상품인데 적극적인 보험가입 권유를 통해 보험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능력이 대면채널에 비해서 취약하다는 점이다. 대면채널의 설계사는 주기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소비자와 관계를 형성하면서 보험가입을 권유함으로써 보험상품을 가입시키는데 비해서 온라인을 통한 보험모집은 온라인상에서 약관을 보여주고 고객이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인력과 설득력에 있어 다소 제한적이다.

2) 전화를 통한 보험거래

전화를 통한 보험판매는 보험회사 소속 또는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맺은 기관 소속의 상담원(Telemarketer)이 불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전화를 하고, 보험상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보험청약서를 녹취의 형태로 작성하여 보험가입을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설계사가 직접 보험가입자와 접촉하는 대면영업의 방식과 많은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전화를 통한 보험판매는 보험가입자가 상품을 제대로 설명듣고 보험을 가입한다는 사실, 고지의무를 사실에 입각하여 이행하였다는 사실, 계약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듣고 이해하고 가입한다는 사실 등 제반 보험가입조건에 관하여 구두로 동의를 하고, 녹취의 형식으로 보험가입이 이루어진다.

전화를 이용한 보험거래는 설계사가 직접 고객과 대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가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의 편리성과 신속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화판매 채널은 비용 측면에서 대면채널에 비해서 저비용 채널로 인식되고 있다. 즉 전화를 이용한 보험판매 채널의 경우 초기 시스템 구축 및 콜센터 상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통신요금 정도이다.⁵⁴⁾ 그리고 전화판매 채널

은 보험계약 체결 및 기타 서비스 제공에서 높은 이용 편의성이 있다. 즉 전화는 소비자와의 접촉에서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에게는 광범위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언제든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⁵⁵⁾

반면에 전화판매의 가장 큰 단점으로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상품을 충분히 이해·설득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전화판매의 특성상 소비자가 보험 상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그리고 소비자가 텔레마케터와 전화통화를 하는 순간에 보통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설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⁵⁶⁾ 또한 전화라는 제약된 수단을 사용하여 보험을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보험모집인이 보험상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안내를 함으로써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전화판매의 또 다른 약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소비자의 신뢰성 및 선호도가 낮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보험상품이 복잡하고 매우 전문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화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저가상품이고 질이 낮은 상품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가의 보험료나 장기상품 또는 보장이 높은 상품을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⁵⁷⁾

(3) 서면동의를 둘러싼 문제점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생명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인터넷상에서 공인인증을 통한 전자서명으로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기 위해서 피보험자와 별도로 접촉하여야 한다. 이러한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서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온라인보험의 가입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즉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계약만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보험회사가 온라인보험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이 상당 부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소비자도 온라인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보험상품

54) 반면에 대면채널의 경우 설계사 수당, 지점 월임차료, 각종 프로모션 비용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55) 안철경·변혜원·서성민, 상계논문, 30면.

56) 안철경·변혜원·서성민, 상계논문, 34면.

57) 안철경·변혜원·서성민, 상계논문, 35면.

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다.

전화를 통한 보험모집의 경우도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시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계약 체결 전반에 대하여 유선으로 통화를 실시하고 녹음을 한 이후에, 청약서를 별도로 발행하여 피보험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고 있는데, 청약서를 주고받는 과정이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신속한 보험가입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서류의 이동 과정에서 서류가 분실되거나 훼손되기도 하고, 보험설계사가 배석하지 않는 자리에서 피보험자의 서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명이 위조될 가능성 또한 농후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비대면 방식으로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보험자의 동의를 통신수단이 아닌 서면의 방식으로 요구함으로써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경제적·시간적인 낭비를 초래하기도 하고,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의 신속성을 저해하고 보험가입을 꺼리게 만드는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정부에서 타인의 생명보험을 전화나 인터넷 등의 통신판매방식으로 판매하도록 허용하면서 피보험자의 별도 서면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으로 볼 수 있다.

2.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에 의한 동의 방안

(1) 전자서명의 개념 및 상법상 서면동의 인정 가능성 검토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되는 정보를 의미한다.⁵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전자문서의 문서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즉 동 규정에 의할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법률행위는 서면에 위한 법률행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이 규정은 일반적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⁵⁹⁾ 따라서 현행 상법 제731조 제1항에 한해서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는 서

58)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2호; 전자서명법 제2조 제1호

59) 김현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쟁점과 과제”, 「법학연구」제15권 제2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7., 313면.

면에 의한 동의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⁶⁰⁾ 결국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보험자의 동의에 전자문서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상법의 조항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⁶¹⁾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전자문서는 종이를 대체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고 전자서명 이외에 별도의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필요하다면 보험계약 관계자들에게 이중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로 공인전자서명이 첨부된 전자문서에 대해서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서면동의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⁶²⁾

생각전대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는 명시적으로 '서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조문의 문리적인 해석상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보기 어렵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조항의 개정 취지가 보험계약 성립 후의 분쟁과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의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서명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전자문서를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서면'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서명'이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⁶³⁾ '공인전자서명'이란 1)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2)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3) 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4) 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등의 4가지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의미한다.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에서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공인전자서명에 대해서는 강력한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다.

60) 같은 의견: 노태악, "전자문서 관련 국내법제 현황과 개선방향", 「법학연구」제11집, 경성대학교 2002, 124~125면.

61) 2012년 12월 27일 박대동 의원 등 11명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 동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고 20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폐기되었다.

62) 최명문, "피보험자의 동의방식의 다양화 인정 근거 미란", 법무부 보험법 특별위원회 회의자료, 2012, 8면 ; 박세민 전계논문(주석 45), 923~924면.

63)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그러나 전자서명이나 공인전자서명 또한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이기 때문에 앞서 검토한 전자문서와 유사한 논리로 현행 상법 제731조 제1항에 한해서는 전자서명(공인전자서명 포함)에 의한 동의는 서면에 의한 동의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위원회 또한 이와 같은 입장이며, 다수의 견해 역시 상법의 개정 없이는 전자서명으로 서면동의를 갈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⁶⁴⁾ 결국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보험자의 동의에 전자서명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상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개정전	개정후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同意를 얻어야 한다.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에 대한 우려사항 검토

전자문서는 종이에 비해 제3자에 의한 위변조가 용이하고, 전자기록매체의 물리적 특성 및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방식 등으로 인하여 문서의 안정성이나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전자서명은 그 자체로는 명의자 본인의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유사시에 위조 여부 판정을 위한 필적감정이 곤란하여 위조 등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다. 한편 공인전자서명의 경우 비교적 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법률에 의해서 강한 추정력이 인정되지만 공인전자서명 내지 공인인증서의 도용이나 부정사용의 위험성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본인이 사용하고 서명한 것인지 나아가 그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확인 방안을 마련

64) 손영화, “전자문서를 이용한 보험계약의 활성화 방안”,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 제65호, 법무부상사법무과, 2014, 61~62면; 김선정,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요건 결여와 과실상계”, 「월간생명보험」통권 제433호, 생명보험협회, 2015.3., 58면.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2012년 상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법무부, 법원행정처에서도 이러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전자문서나 전자서명에 의한 방식이 과연 종이 청약서보다 위변조의 가능성이 높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의문이 든다.

첫째, 최근 IT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다양한 금융거래에서 전자문서 내지는 전자서명 방식이 널리 활용되고 있고, 보안기술 또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태블릿 PC 상의 전자서명은 1,024 단계의 필압, 필속의 인식이 가능하고, 개인 고유의 필체 및 서명이 이루어진 위치정보의 저장이 가능하다. 또한 서명행위의 모양, 속도, 획, 펜압력, 시간 정보 등을 분석함으로써 유사시에 필적감정을 할 수도 있다.⁶⁵⁾ 또한 최근 IT 기술의 발전으로 전자자필서명은 타임스탬프 등의 위변조 방지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자자필서명이 이루어진 이후에 위변조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입증할 수도 있다. 오히려 종이를 통한 자필서명의 경우에는 필적감정사가 육안으로 필적을 대조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변조 여부의 판단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판단 결과가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전자문서 내지는 전자서명에 의한 보험모집 방식은 기존의 종이 청약서를 이용한 모집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즉 전자자필서명은 기존의 종이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던 방식을 전자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보험모집인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모집인이 직접 피보험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전자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종이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는 방식에 비해서 위변조의 가능성이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전자문서 위변조 방지 및 검증 솔루션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등 비약적인 IT기술의 발달은 전자문서의 위변조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오히려 서면 동의보다 용이하고 정확한 검증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전자문서에 대하여 보안조치가 강화된 복수의 서버에 분리저장 되는 등의 안전조치가 이뤄지는 경우에 장기간 보관으로 인한 문서훼손유실의 위험이 많은 종이보다 오히려 안전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전자문서 내지는 전자서명의 경우 그 안정성이

65) 이성남,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서면동의 제도 관련 법적 이슈 검토”, 「월간손해보험」 제571호, 손해보험협회, 2016.6., 41면.

나 신뢰성 및 위변조 가능성 등 모든 측면에서 종이를 통한 지필서면 방식보다 취약하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본인인증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자문서나 전자서명에 의하더라도 피보험자 손해의 위험성, 사행계약성은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그 결과 서면에 의한 동의 방식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⁶⁶⁾

다만 전자문서나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하여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는 동의의 위변조 행위나 전자서명의 안정성에 대한 기술적인 흠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 본인의 지필 여부를 재확인하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⁶⁷⁾ 구체적인 보완 방법 중의 하나로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를 대면하여 전자서명을 받게 하거나,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전화를 하여 동의 여부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방법, 전자서명에 부수하여 홍채나 지문 인식 등 생체정보를 추가로 징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소결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상법 제731조의 규정은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타인인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 실무처리상 경제적 추가비용을 발생시키고 업무처리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보험가입을 위한 동의 절차를 복잡하고 번거롭게 만들고 있어 보험소비자에게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동의 방식에 서면동의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또는 전자서명 등에 의한 동의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피보험자의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정보를 통한 동의 방식을 활용한 동의 방식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동의 방식이 설계사가 직접 보험소비자와 만나서 보험을 가입하는 방식의 대면영업에 있어서는 도입할 실익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볼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비대면 보험거래에 있어서 서면동의 외의 동의 방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법무부나 금융위원회 등

66) 같은 의견: 박세민, 전계논문, 240면 ; 이성남, 전계논문, 41면.

67) 같은 의견: 맹수석, “전자문서를 이용한 보험계약의 법적 쟁점-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동의 방식을 중심으로”, 「법조」(Vol.719), 2016.10.

정부기관들의 입장을 보면 서면동의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다소 시기 상조로 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필자는 이하에서 타인의 사망보험에 대해서 서면동의를 일괄적으로 대체하는 방안보다는 범위를 조금 더 좁혀서 비대면 보험거래를 중심으로 동의 방법을 현실화할 필요성과 구체적 동의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3. 비대면 보험거래에 있어 동의 방법 다양화 방안

타인의 사망보험을 전화나 인터넷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서면동의만을 고집한다면 이는 새로운 판매채널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무리하게 얻거나 허위의 동의를 받도록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즉 비대면 방식의 보험모집에 있어 피보험자가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해외에 체류중이거나 병원에 입원중인 경우 등)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모집인 등이 서명을 위변조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비대면 보험영업팀(예를 들어 인터넷보험팀, 텔레마케팅팀 등)을 별도로 설치하고, '비대면'이라는 채널 고유의 특성에 따라 영업전략을 마련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 있어 서면동의를 별도로 받도록 함으로써 대면채널과 유사한 업무 부담을 보험회사에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이러한 서면동의의 징구에 대한 부담으로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을 인터넷보험으로 판매하고 있지 않으며, 전화를 통하여 보험모집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에게 우편으로 청약서를 발송하여 서면동의를 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서면동의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분실 또는 위변조 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문서 내지는 전자서명은 그 안정성이나 신뢰성 및 위변조 가능성 등 모든 측면에서 종이를 통한 자필서명 방식보다 취약하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본인확인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비대면 보험거래의 도입취지와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을 반드시 서면동의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전화를 통한 보험거래에 대해서는 피보험자 동의방법으로 유선녹취를 포함시켜야 전화를 통한 보험판매가 활성화

화되고,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본래 정부가 의도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계약체결 과정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와 통화하여 녹취하고 음성녹음 기록을 보관함으로써 서면동의에 갈음하는 것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보험회사의 업무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훨씬 더 유연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⁶⁸⁾ 유선녹취는 고도화된 솔루션 형태의 시스템을⁶⁹⁾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모든 유선통화 내역이 시스템에 저장되고,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 또한 유선녹취 시스템은 철저하게 물리적 기술적 보안 장치를 하여 녹취정보를 장기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유선녹취 방식이 서면동의 방식보다 더 허술하거나 보안에 취약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비대면 보험거래에 있어 피보험자의 동의를 반드시 서면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전자서명이나 유선녹취를 통한 동의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증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안전성이나 편리성 그리고 실용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서면동의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 체제하에서는 서면동의 이외의 다른 동의 방법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비대면 보험거래에 있어서 전자문서나 전자서명 또는 유선녹취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

개정전	개정후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同意를 얻어야 한다.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 ----- ----- <u>서면(단</u> <u>비대면의 방식으로 보험모집을 할 경우</u> <u>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u> <u>전자서명 또는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u> <u>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전자문서와 유선녹취를 포함한다)</u> ----- -----.

68) 박세민, 전계논문(주석 30), 924면.
69) 현재 보험회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녹취시스템은 MPC사가 개발한 텔레웹(Teleweb)이 있다.

그러나 전자문서나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는 사행계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 본인의 자필 여부를 재 확인하는 방법, 유선녹취 방식으로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화상통화를 통하여 본인확인을 하고 이를 저장하는 방법이나 휴대전화 공인인증의 방법, 기타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전화를 걸어 재확인 하는 방법 등을 병행한다면 안전성이나 신뢰성이 상당부분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문인식⁷⁰⁾이나 홍채인식⁷¹⁾ 등 다양한 생체정보를 통하여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체인식 기술은 IT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거래 및 전자상거래, 기업의 정보보호를 위한 출입통제시스템, 전자여권을 통한 출입국 관리 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⁷²⁾ 일례로 최근 삼성은 갤럭시 노트7에서 홍채인식을 통하여 모바일 뱅킹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선보인바 있는데, 이는 '삼성 패스를 통해 국내 은행의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존 전자금융 거래 시에 요구되던 공인인증서나 OTP, 보안카드 등을 홍채 인증으로 대신해 로그인이나 계좌 이체 등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기능이다.

이와 같이 생체정보는 본인확인 기능에 있어 자필서명보다 증명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위변조 가능성이 매우 낮고, 해킹 등 정보유출에 대한 안전성 또한 기술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그 활용도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⁷³⁾⁷⁴⁾ 따라서 향후에는 생체정보를 통한 서명도 인정될 수 있도록 상법을

70) '지문인식'이란 생체인식의 하나로, 각 개인마다 다른 지문정보를 추출하여 정보화시키는 인증방식이다. 피부의 표피 밀층인 진피에서 만들어진 지문은 진피 부분이 손상되지 않는 한 평생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지문인식(Finger Scan)은 개개인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오래 전부터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문이 노동으로 닳아 없어지거나 건조할 때, 이물질이 묻으면 인식이 어렵다는 게 단점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71) '홍채인식'이란 홍채의 패턴을 코드화해 이를 영상신호로 바꾸어 비교·판단하는데, 일반적인 작동원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정한 거리에서 홍채인식기 중앙에 있는 거울에 사용자의 눈이 맞춰지면, 적외선을 이용한 카메라가 줌렌즈를 통해 초점을 조절한다. 이어 홍채 카메라가 사용자의 홍채를 사진으로 이미지화한 뒤, 홍채 인식 알고리즘이 홍채의 명암 패턴을 영역별로 분석해 개인고유의 홍채 코드를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홍채 코드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는 것과 동시에 비교 검색이 이루어진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72) 최태식, "생체인식(Biometrics)과 그 미래", KT경제경영연구소, 2013, 1면.

73) 생체정보 중 특정정보만을 추출하여 암호화·분할과정을 거쳐 보험회사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분산보관함으로써 해킹 등을 예방하고 유사시 본인확인을 한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본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가입 사실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하여 피보험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피보험자의 살해 위험성, 도박보험의 위험성 및 공서양속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피보험자의 동의 여부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차단하고 보험가입 이후에 본인의 진정한 동의 의사표시인지 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입증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과 홍채나 지문인식 등의 생체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은 모바일 간편결제 등 다양한 금융거래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자문서나 전자서명, 생체정보의 기술은 더욱 발전하고 이와 더불어 그 활용 또한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서면동의 대체수단들이 새롭게 개발되고 고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피보험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서 보험거래를 하여야만 피보험자의 인격권이 보호되고 살해의 위험성이 낮아지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이 든다. 과거나 지금이나 피보험자 살해를 통한 보험금 부당편취 사건은 꾸준히 존재하여 왔고 결코 줄어든 적이 없다. 이러한 문제는 피보험자 서면동의제도와는 무관하다고 여겨지며, 오히려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과 이기심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74) 생체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의 일환으로 2016년 2월 금융보안원은 '금융서비스 바이오정보 인증 관리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며 생체정보의 수집과 저장, 이용, 파기 및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참고용 기준선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생체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보안수단이 개발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FIDO(Fast Identity Online) 시스템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지문, 홍채, 안면인식 등 생체인증을 접목한 사용자 인증 방식이다. FIDO는 공인인증이나 아이디 방식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데, 공인인증서 해킹 등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보안업체 뿐 아니라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KT 등 여러 기업이 지문, 홍채, 안면인식 등 생체인증을 접목한 사용자 인증 방식의 국제 표준 규격인 'FIDO(Fast Identity Online)' 얼라이언스의 인증을 받고 관련 솔루션을 출시 또는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금융결제원이 주도하는 '금융권 표준 생체정보분산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형은행과 증권사, 카드사 등 약 50개의 금융사들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디지털타임스, "대세 생체인증시대, 보안 안심할 수 있을까?", 2016.12.22.자 기사).

현실이 이리함에도 타인의 사망보험에 있어 피보험자의 동의 방식으로 서면동의만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보험소비자나 보험회사 모두에게 피해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동의 방식에 서면동의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또는 전자서명에 의한 동의는 물론 피보험자의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정보를 통한 동의 방식이나 전화 녹취나 화상통화 방식을 활용한 동의 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대면영업의 경우 설계사가 직접 보험가입자와 만나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전자문서나 전자서명 등 서면 이외의 동의방법을 도입할 실익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전화나 인터넷 등을 활용하는 비대면 보험거래는 거래의 신속성과 보험가입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므로, 제도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서면동의 이외의 동의 방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비대면 보험거래에 있어서는 서면 동의 외에도 전자서명, 공인전자서명 및 음성녹취가 서명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사행계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서명이 진정성 있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재확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 박세민, 「보험법」 제3판, 박영사, 2015.
- 양승규, 「보험법」 제5판, 삼지원, 2004.
- 이기수 최병규 김인현, 「보험해상법」 제9판, 박영사, 2015.
- 임용수, 「보험법」, 법률정보센터, 2006.
- 장덕조, 「보험법」 제3판, 법문사, 2016.
- 정동윤, 「상법(하)」, 법문사, 2011.
- 정찬형, 「상법강의(하)」 제16판, 박영사, 2014.
- 정희철, 상법학(하), 박영사, 1990.
- 최기원, 보험법 제3판, 박영사, 2002.
- 최준선, 「보험법·해상법·항공운송법」, 박영사, 2012.
- 강대섭,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 「상사판례연구」 제15집, 한국상사판례학회, 2003.
- 김선정,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요건 결여와 과실상계”, 「월간생명보험」 통권 제433호, 생명보험협회, 2015.3.
- 김은경, “보험계약 무효시 보험료반환청구와 소멸시효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 다 92612 판결에 대한 평석”, 「강원법학」 제35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2.
- 김은경, “생체정보와 보험법상 활용문제”, 「경영법률」 제26권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6.
- 김현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쟁점과 과제”, 「법학연구」 제15권 제2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7.
- 노태악, “전자문서 관련 국내법제 현황과 개선방향”, 「법학연구」 제11집, 경상대학교, 2002.
- 맹수석, “전자문서를 이용한 보험계약의 법적 쟁점-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동의 방식을 중심으로”, 「법조」(Vol.719), 2016.10.
- 박세민,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해석상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안암법학」 제25

- 권, 인암법학회, 2007.
- 박세민, “상법 제731조상 피보험자의 동의 방식 다양화에 대한 연구”, 2016년 상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 박세민,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해석상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인암법학」 제23권, 인암법학회, 2007.
- 서재익, “비대면 보험시장에 대한 현황분석과 활성화방안 :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손영화, “전자문서를 이용한 보험계약의 활성화 방안”,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65호, 법무부 상사법무과, 2014.
- 안철경 변혜원 서성민,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보험연구원, 2011.
- 유주선,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요건에 관한 연구 -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에서-”, 「인암법학」 제25권, 인암법학회, 2007.
- 이성남, “타인의 생명보험의 규제에 관한 연구”, 「금융법연구」 제9권 제1호, 한국금융법학회, 2012.
- 이성남,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서면동의 제도 관련 법적 이슈 검토”, 「월간손해보험」 제571호, 손해보험협회, 2016.6.
- 정홍주 류원우 우종균, “PC통신을 이용한 보험판매 활성화 방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996.
- 조지현,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주인-피보험자의 주인 및 무효인 보험에서의 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제26권 2호, 한국상사법학회, 2007.
- 조현락,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고시연구」, 고시연구사, 2005, 348면.
- 최명문, “피보험자의 동의방식의 다양화 인정 근거 마련”, 법무부 보험법 특별위원회 회의자료, 2012.
- 최태식, “생체인식(Biometrics)과 그 미래”, KT경제경영연구소, 2013.

<Abstract>

A study on the amendment of consent from the insured on solicitation for insurance by non face-to-face way

Jun, Han Deok

If the insured would die, the beneficiary could receive benefit in insurance which covers the death of a third person. This type of insurance has a speculation and moral hazard. To resolve these problem the commercial law(731 1) regulates that a contract of insurance which covers the death of a third party as a peril insured against shall require the written consent of the third party at the time of conclus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According to the commercial law, only written consent is effective and other method such as digital signature or telephone, etc. is in valid. However it seems like to swim against the stream of times to insist on the written consent considering modern society which internet environment has been advanced rapidly. And the written consent system causes discomfort by limiting the right of choice of consumer. Moreover, it imposes heavy burden such as face-to-face contact and documentation, etc. on the insurance company. In this thesis I would like to review on the problem of the current written consent system and propose various improvements to complement the system focusing on solicitation for insurance by non face-to-face way.

Key Words : Insurance which covers the death of a third person., Written consent, The insured, solicitation for insurance by non face-to-face way , Digital signature